

# 감 사 원

## 통 보

제 목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 기능 미흡
소 관 청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국무조정실
내 용	

국조실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기존 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 관련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등 규제 정비 여부는 해당 규제를 운용하는 소관 부처가 1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에 관한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 등을 감안할 때,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폐지·개선을 건의 받고도 존치되고 있거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비하기 곤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규개위 등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규개위는 국민의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규제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되어 기존 규제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 분석 결과

이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규개위의 기존 규제 심사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규제 소관 부처가 2014년 이후 경제단체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하여 규제 개선 건의를 접수하였으나 수용하지 않고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① 기존 규제 폐지·개선 건의에 대한 규개위의 심사 여부, ② 정비 필요성 있는 규제 존치 여부를 분석하였다.

### (1) 기존 규제 폐지·개선 건의에 대한 규개위의 심사 관련

우선 규개위의 기존 규제 심사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규개위가 논의한 인건을 분류하여 보면, [표 23]과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총 109건 중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 심사에 관한 의결이 101건, 기존 규제의 필요성 심사에 관한 의결은 1건으로 나타났다.

[표 23] 규개위 심의 인건 분석 실적

(단위: 회, 건)

1)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등 기술능력 및 사무실 확보 기준 요건 완화 등 8건의 규제를 심사하여 개선권고하였고, 이 중 7건의 규제가 개선이 완료됨

구분	본회의 의결 건수					분과위원회 총안건수						
	개최횟수	총안(A+B)		기타		개최횟수	계		총안건수			
		총안(A)	총안(B)	규제신실강화	기타		규제신실강화	기타	규제신실강화	기타		
2013년	22	47	40	39	0	1	7	36	64	0	20	0
2014년	20	46	31	30	0	1	15	30	46	0	0	0
2015년	22	52	38	32	1	5	14	35	70	52	0	18
계	64	145	109	101	1	7	36	101	200	162	0	38

주: 분과위원회의 경우 모든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보고건수가 0건임  
 자료: 연도별 규제개혁백서 재구성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총 200건 중 규제 신설·강화 심사 관련 의결은 162건이었고, 기존 규제 심사에 관한 의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개선 건수가 가장 많은<sup>2)</sup> 규제개혁신공고의 경우 [표 24]와 같이 건의 접수 후 1차 답변을 실시한 건은 13,423건인데, 기조치·수용·일부 수용의 취지로 답변한 건의는 그 중 3,164건이었다.

[표 24] 규제개혁신공고 1차 답변 현황(2016년 5월 말 기준)

계	수용	일부 수용	기조치	불수용	중장기검토
13,423	1,042	500	1,622	7,603	2,656

주: 중복 건의 포함  
 자료: 국조실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불수용의 취지로 답변한 건의 7,603건과 중장기검토로 답변한 건의 2,656건 등 계 10,259건에 대한 규제위 심사 및 정비 실태를 점검하였다.

2) 규제개혁신공고를 통하여 접수된 규제 개선 건수는 2014년 이후 총 13,000여 건으로 경제단체 건의과제(2013년 이후 419건), 손톱 밑 가시(2013년 이후 1,625건) 등 다른 규제개혁제도를 통하여 접수된 건수 중 가장 많은

점검 결과, 불수용으로 1차 답변한 건의 7,603건과, 중장기검토로 1차 답변한 후 2차 답변 시 불수용으로 답변한 건의 1,134건 등 계 8,737건 중 국조실은 416건(중복 건의 제외)에 대해 소관 기관에 재검토하도록 소명을 요청하였고, 소관 부처는 [표 25]와 같이 183건(44.0%)에 대해 여전히 규제를 존치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중 국조실이 규제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8건에 그쳤다.

[표 25] 규제개혁신공고 소명 요청 과제의 후속조치 현황

(단위: 건, %)

소명 요청 건수	규제 존치		규제 개선		대안 마련		소명 검토 중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416	183	44.0	139	33.4	86	20.7	8	1.9

주: 중복 건의를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임  
 자료: 국조실 자료

(2) 규제위 심사 없이 존치되고 있는 과제의 정비 필요성 관련

(1)항과 같이 규제위가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을 심사한 실적에 비하여 기존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심사한 사례가 적은 상황에서 기존 규제위 심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6. 5. 23.~6. 21.) 중 규제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존치되고 있는 건의과제의 개선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였다.

(가) 불수용 과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우선, [별표 1]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 주요 규제”와 같이 중앙부처가 정비하지 않고 있는 규제 중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개선이 요구된 규제 18건을 선별하여 규제 전문가(한국규제학회 소속)에게 설문조사 방식으로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기초로 정비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층 점검하였다.

실문조사 결과, [별표 2] “주요 규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6 등의 규정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서는 100대에 한해서만 적합성평가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면제수량 제한’ 등 규제 5건의 경우 평가자 전원이 정비 시 문제점보다 정비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3)</sup>

이에 설문조사 결과 규제 정비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한 인원이 많은 상위 9건의 규제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비 필요성을 심층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면제수량 제한’ 등 아래 2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정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4)</sup>

**정비 필요성이 있는 규제 사례**

- (사례 1)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면제수량 제한
- 「전파법」 제5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7의 규정에 따르면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와 기술 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방송통신기자재는 100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
  - 그런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 시 시험연구계획서, 시유서, 수입계약서 등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적합성평가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면제 수량 율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국가통합인증(KC)마크를 사용하는 8개 부처의 19개 법령의무인증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하게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에서만 100대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음
  - 그런데도 미래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 수량을 확대하여 달라는 경제단체의 건의에 예외규정이 있다는 사유로 관련 규정 개정하지 않고 있음
- (사례 2) 군사시설 내 휴게음식점 및 재래점 영업 제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르면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서에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3)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 규제 18건 중 16건의 경우 정비의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정비 시 문제점이 크다고 응답한 전문가보다 많았음  
4) 각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4. 개별 규제운용의 적정성 분야 참고

- 그런데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객실을 설치할 수 있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반면, 휴게음식점 및 재래점은 객실 설치와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고 일반음식점에 비해 시설규모도 작아 규제 완화가 필요

- 그런데도 식약처는 군사시설에서 휴게음식점 및 재래점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민관합동규제추진단의 건의에 「건축법」상 저촉된다는 사유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음

한편, 규제 정비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한 인원이 많은 규제 9건 중 ‘안전상의 비약품 약국 외 판매 품목 제한’ 등 2건의 규제에는 규제 소관 부처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선계획을 발표하는 등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나)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가)항과 같이 소관 부처가 폐지·개신 건의에도 수용하지 않은 규제 중 일부는 정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 규제에 대한 규제위의 바람직한 관리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 규제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있는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2016년 4월 말 현재 각 부처가 발굴·접수한 규제 개선 과제 중 불수용하기로 결정한 151건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13회, 총괄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표 28]과 같이 이 중 8건은 해당 부처의 의견대로 규제준치를 인정하였고, 136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유지하자 규제개혁조정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그중 5건은 개선안을 추가로 확정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5) ‘안전상의약품 약국 외 판매 품목 제한’ 규제는 2016. 7. 5.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선계획이 발표되었고, ‘택배산업 증차금지’ 규제는 국토부가 2016. 8. 30.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여 규제를 완화  
6) 이 중 2건은 미해결과제로 관리

[표 26] 신산업투자위원회 심의과제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개선방안 확정		규제준치 인정	개선방안 미확정	
	건의수용	대안미면		개선신고	취기본의
신산업 투자위원회	116	20	8	4	3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결의 확정	분과위원회의 결의 확정	-	4	3
규제개혁조정회의	신산업투자위원회의 결의 확정	신산업투자위원회의 결의 확정	-	개선안 확정 5건 미확정과제 2건	-

자료: 국조실

이처럼 소관 부처가 개선 건의를 불수용한 신산업 규제외의 경우 신산업투자위원회가 규제의 필요성을 심의하여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대부분 개선되고 있었다.

반면 (1)항과 같이 신산업 외 분야의 규제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가 기존 규제 폐지·개선 건의를 불수용하다라도 규제외 등이 이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 문 제 점

국조실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1조의 규정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외 심사 등 사무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외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앞서 실시한 바와 같이 규제외는 국민이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조실은 2015. 1. 23. 규제외에 보고한 “규제신문고 운영 개선방안”에서 파급력이 크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는 규제외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3. 13.에도 규제외에 “2015년 행정규제 업무관리방안-행정규제 업무관리 기준(안)”을 보고하면서 경제·사회적 파급도가 높고 해결이 시급한 중점분야 규제 건의과제(규제기요턴<sup>7)</sup> 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외의 심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한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분석결과 (나)항’과 같이 소관 부처가 개선 건의를 불수용한 신산업 규제외의 경우 신산업투자위원회가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심의하여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국조실은 규제 소관 부처가 개선하지 않고 있는 과제 중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인·전문가의 의견 수렴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과제에 대해 규제외가 직권으로 그 필요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 심사 기준<sup>8)</sup> 등을 수립·시행하여 규제외의 기존 규제 심사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조실은 위와 같이 규제외가 기존 규제를 심사한다는 기본 방침만 정해 놓고, 「규제개혁 매뉴얼」(2016년 4월 국조실), 기존 규제 정비 관련 지침 등에 규제외에 안전을 상정하는 기준, 기존 규제 심사 시 안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구체적인 심사 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분석결과 (1), (2)항’과 같이, ① 규제외는 소관 부처가 개선건의를 불수용한 규제외에 대해 사실상 심사를 하지 않고 있고, ② 소관 부처가 개선

7) 경제단체가 건의한 과제 중 비효율적인 규제를 일거에 제거하는 규제 개선 방식

8)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시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임명규제 심사 시에는 임명규제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건의를 불수용한 규제 중 일부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데도 규제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정비 필요성이 있는 규제가 그대로 존치될 우려가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국조실은 파급력이 크거나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규제는 전(全) 정 부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기존 규제 심사 기능이 미흡하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국조실은 기존 규제 심사 시 개별 규제를 규제위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기존 규제에 대해 일괄하여 상정하고 있으며, 실제 2015년의 경우 제347회 본회의(2015. 5. 22.)에서 “2015년도 규제정비계획”을 심의하여 969건의 기존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고, 제361회 본회의(2015. 12. 24.)에서도 “기술규제 개선방안”을 의결하여 17건의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과위원회에서 일몰규제 960건을 심사한 바 있어 기존 규제 심사 실적이 저조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존 규제의 심사는 국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에 따라 규제위가 직권으로 특정한 기존 규제의 개선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기능이다.

그런데 국조실의 답변에서 규제위의 기존 규제 심사 실적의 근거로 제시한 규제정비계획 또는 기술규제 개선 등의 심의는 각 부처가 수립한 규제정비계획을 보고받아 수정·확정하는 것이지 규제위가 개별 규제에 대해 유지 필요성과

개선 필요성 등을 직권으로 분석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규제정비계획 심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하는 것으로 기존 규제의 심사와는 별개의 업무이다.

일몰규제 심사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국민, 이해관계인 등의 개선 의견을 받아 기존 규제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답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별표 1]

####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 주요 규제

연번	규제 내용	건의 경로	건의 일자	답변 내용
1	전략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4년	시실상 불수용
2	군사시설 내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 제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14년	불수용
3	인전상비의약품 옥구 외 판매 품목 제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15. 10. 15.	불수용
4	하수온도저어느기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지정 제한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4년	불수용
5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면제수용 제한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4년	불수용
6	근로조건 변경절차에 대한 이중 규제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4년	불수용
7	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4년	불수용
8	영리법인형 저회사에 대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정 제한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4년	불수용
9	건설공사 보험료 시정정산에 관한 규제	규제개혁신문고	2014. 6. 11.	일부 수용
		규제개혁신문고	2015. 1. 30.	불수용
10	심야택시 운행면허자격 등에 관한 규제	규제개혁신문고	2016. 3. 22.	시실상 불수용
11	택배산업 중차금지 등에 관한 규제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4년	시실상 불수용
		규제개혁신문고	2014. 4. 8.	일부 수용
12	경제적 섹터단체 및 섹터적 섹터단체	규제개혁신문고	2014. 4. 16.	일부 수용
		규제개혁신문고	2014. 4. 24.	일부 수용
		규제개혁신문고	2015. 5. 13.	일부 수용
13	개발제한구역 내 폐축사 용도변경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처에 서면건의	2014. 10. 22.	미답변
14	조제연의 택배송 제한	신산업투자위원회	2016년	시실상 불수용
15	인전상비의약품의 판매처 제한	규제개혁신문고	2015. 12. 21.	불수용
16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4년	불수용
		규제개혁신문고	2014. 4. 13.	불수용
		규제개혁신문고	2014. 4. 26.	불수용
17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업종 제한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5. 7. 9.	불수용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5. 7. 9.	불수용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5. 7. 9.	불수용
18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5. 7. 9.	시실상 불수용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주요 규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단위: 점, 명)

연번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규제개원 필요성 점수 합계	규제개원 문제가 점수 합계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한 인원	문제가 크다고 응답한 인원
<b>1차 설문(1~9번)</b>						
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전기사업법」 제48조 등,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184	94	9	1
2	군사시설 내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 제한	「식용위생법」 제37조 「식용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180	77	9	1
3	인원상비의인력 인규 외 판매 품목 제한	「약사법」 제44조의2 「인원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176	75	9	1
4	하수오차에너지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지정 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부담금 축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167	89	9	1
5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면제수용 제한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6,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6조	165	69	10	0
6	근로조건 변경절차에 대한 이중 규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4조 등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6조 등	151	116	7	3
7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	「전기공사법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법법」 제25조	146	114	5	5
8	영리법인형 지정사에 대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정 제한	「장애인고용법」 제22조, 제28조 등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의2 등	136	112	7	3
9	건설공사 수행로 사후정산에 관한 규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116	107	6	4
<b>2차 설문(10~19번)</b>						
10	심야버스 운행면허자격 및 운행시간 규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	196	86	9	0
11	택배산업 종사금지 등에 관한 규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등	191	76	9	0
12	간접적 섹터문제 및 섹터적 섹터문제	「장소보호법」 제26조 제1항, 「개인신용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3호	190	92	7	2
13	개발제한구역 내 폐축사 용도변경 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181	64	9	0
14	조제어의 확대배출 제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	175	61	9	0
15	인원상비의인력의 판매처 제한	「약사법」 제44조2	174	64	8	1
16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등	171	99	8	1
17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업종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62	101	7	2
18	택배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147	126	4	5

주: 1. 1차 설문은 규제 전문가 10명이 응답하였고, 2차 설문은 9명이 응답  
 2. 1차 설문 시 규제별 규제개혁 필요성 및 문제점 점수 총점은 300점(37개 문항  
 X10명X10점)이고, 2차 설문 시 규제별 규제개혁 필요성 및 문제점 점수 총점은  
 270점(3개 문항X9명X10점)임

자료: 한국규제학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소관 부처가 폐지·개선하지 않고 있는  
 규제 중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전문가 검토 결과 규제 폐지·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권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 심사 기준을 수립·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  
 보)

# 감 사 원

## 통 보

제 목	신설·강화 규제 등록 누락
소 관 청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국무조정실
내 용	

국조실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심사를 거쳐 신설·강화된 규제를 규개위에 등록하도록 규제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 관련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개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규개위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개위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제등록제도는 국민과 규제 상대방에게 규제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 규제총량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생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부 규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존 규제의 정비는 규개위에 등록된 규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2015년 규제개혁 평가 세부 추진계획”(2015년 11월 국조실)에 따라 등록규제 건수 대비 기존 규제 정비 실적이 평가지표 중 하나로 정해져 있으며, 규제비용 총량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규제의 등록은 중요한 미가 있다.

### 문 제 점

신설·강화 규제 등록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2009년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2009. 11. 3. 시행)를 실시하여 구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의 신설·강화 규제 190건 중 111건이 미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하여 사후관리하도록 국조실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은 2015년에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실태” 감사(2015. 11. 23. 시행)를 실시하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신설·강화된 규제 중 141건이 미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두 기관에 주의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신설·강화 규제의 미등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조실이 규제 신설·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규제 심사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규제 등록 여부를 파악·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국조실은 신설·강화 규제 규제 심사결과와 등록규제 리스트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설·강화 규제의 미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규제위의 심사를 받아 신설·강화된 국토부 등 5개 부처<sup>2)</sup>의 규제 1,894건에 대해 등록 여부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2014년 규제위의 심사를 받아 신설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431건(22.8%)이 [표 37]과 같이 규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등<sup>3)</sup> 규제위 심사를 거친 신설·강화 규제가 미등록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강화 규제 미등록 사례(2013~2015년)**

-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등 4개 조항이 2014. 11. 24. 규제위의 심사를 받았으나 규제 등록 누락
- (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감염병 환자 등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통신사·카드회사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규제는 2015. 12. 11. 규제위의 심사를 받았으나 규제 등록 누락

**[표 37] 신설·강화 규제 미등록 현황(2013~2015년)**

(단위: 건, %)

구분	계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신인부	식약처
신설·강화 규제 수(A)	1,894	945	101	244	300	304
미등록 규제	431	283	25	45	45	23
비율(B/A)	22.8	31.0	24.8	18.4	15.0	7.6

- 1) 규제위 심사 결과자료는 규제정보시스템 내 심사지원시스템에 입력·관리되고 있고, 규제 등록은 규제정보시스템 내 규제등록관리시스템에서 관리
- 2)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 3) 감사원 감사기간 중 확인한 미등록 소관 부처에 통보한 결과 각 부처는 미등록 규제를 감사기간 중 등록 조치함

자료: 국토부 등 5개 부처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규제등록을 통해 국민 및 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규제의 질적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록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등록 누락으로 인해 규제완화 등 기존 규제 정비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국조실은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및 등록 누락을 막기 위해 심사지원시스템과 규제등록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신설·강화 규제의 등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심사정보를 규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감 사 원 인

## 통 보

### 제 목 네거티브 규제개선 추진 및 이행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국무조정실

내 용

국조실은 2013년 8월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네거티브 규제체도의 적정 운영 방법

네거티브 규제 개선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 크고 사전 규제 of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적은 분야에 적용하고, 특히 국민의 건강·생명·안전·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는 신중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조실도 2013. 5. 14. 국무회의에 네거티브 규제 개선 추진 사항을 보고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감독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에 따르면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경우’와 ‘네거티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2013년에 153건, 2014년 이후 180건의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추진일정에 따른 실적을 보고하겠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조실은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을 추진할 때 국민의 건강·생명·안전 등과 같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야보다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투자 관련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각 소관 부처가 계획 취지에 맞게 추진하는지 이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국조실이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의 추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2013년 실적 152건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의 적정성, 실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서의 전환 여부를 점검하였다.

#### (1)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대상과제 선정 부적정

우선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야의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담배는 국민 건강·보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사전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국조실은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담뱃갑 포장지의 인쇄 방식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켜 추진하였다.

한편, 2015. 6. 22.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담뱃갑 포장지 등에 경고 문구 뿐만 아니라 경고그림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담배의 제조자·수입판매

업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강화되었다.

**유사 사례**

- 소방시설 설치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정 수준의 사전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데도
- 국조실은 소방시설 설치 대상을 정하고 있는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의 규정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 한편, 2013. 11.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피난유도선<sup>1)</sup>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영화상영관, 복합영상제작업 영업장 등이 추가되어 규제가 강화

**(2)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의 이행관리 부적절**

그리고 2013년 실적 152건을 대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표 41]과 같은 판단기준을 정하여 실제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41] 네거티브규제 확대방안의 실질적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판단기준**

유형	예시
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지적요건을 폐지하거나 결격사유로 전환하는 경우 - 시범·경제활동 영역 중 제한되는 영역을 규정하는 경우 - 인허가·승인·지정 등의 요건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② 네거티브 전환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규제 개선	- 인허가·승인·신고 등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경우 - 시범적·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경우 - 시범·경제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경우 등
③ 네거티브 방식과의 관련성이 낮은 일반적 규제 개선	- 일반적인 규제완화·합리화 - 규제강화 등
④ 규제 개선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법령·행정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경우 - 기시행 등의 사유로 별도의 개선조치 없이 기존 조항이 유지된 경우 - 규정·용어의 단순장비 등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분석 결과, [표 42]와 같이 전출방사업의 등록요건을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한 「방송법」 제9조 제10항의 개정 등 35건(23%, 유형①과 ②의 합

- 1) 햇빛·진동불·진류 등에 의하여 빛을 내는 유도체로서 유사 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 및 시설
- 2) 방송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제)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되었거나 또는 네거티브 전환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규제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네거티브규제 확대방안의 실질적인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단위: 건, %)

유형	대표 사례	건수	비율
① 네거티브규제로 전환	「방송법」 제9조 제10항의 전출방사업 등록요건을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	18	11.8
② 네거티브 전환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규제 개선	「우편법」 제2조의2의 규정을 삭제하여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	17	11.2
③ 네거티브 방식과의 관련성이 낮은 일반적 규제 개선	「인삼산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인삼 경작에 관한 신고 접수 기관을 확대	100	65.8
④ 규제 개선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본문에서 정하고 있던 소방기술 관련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정비	17	11.2
합계		152	100.0

주: 유형 ④로 분류된 17건 중 8건은 과제 선정 당시부터 규제 개선으로 볼 수 없는 과제를 선정된 것이고, 나머지 9건은 개선추진 중 무산된 건 등임  
자료: 국조실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나머지 117건은 인삼 경작에 관한 신고 접수·수리 기관을 기존의 인삼조합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까지 확대하도록 「인삼산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개정한 사례와 같이 네거티브 규제방식과의 관련성이 낮은 일반적 규제 개선(100건, 65.8%)이거나, 법령 본문에서 정하고 있던 소방기술 관련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서 정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정비한 사례와 같이 규제 개선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17건, 11.2%)에 해당하였다.

### 규제 개선으로 보기 어려운 주요 사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3호의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요건 중 하나를 '법인 인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지선자 또는 한정채산자가 없을 것'에서 '법인 인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실적으로 판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본문에서 정하고 있던 소방기술 관련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4의 2]에서 정하도록 단순화 규정을 정비하면서 이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실적으로 판다

이와 같이 2013년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의 실적으로 관리하는 152건 중 117건(77.0%)은 네거티브 규제개선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국조실은 "2013년 규제개혁백서"에 네거티브규제 확대방안에 따라 2013년 153건의 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거나 네거티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국조실은 2014년 이후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180건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현 법체계하에서 위 확대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추진실적을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어,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의 적정성, 실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제 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기술·신제품 등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네거티브 규제 개선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국조실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생명·안전 등 사회

적·공익적 규제 분야를 제외하고 기술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부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일부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대상과제 선정이 부적절하였다는 사항 관련 국조실은 2013년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은 특정한 사항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 입법양식과 상관 없이 네거티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 의미로 파악하여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대상과제 선정이 적절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실질적 의미에서 네거티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모두 네거티브 규제 개선 추진실적으로 인정하였고, 이외 네거티브 방식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규제 개선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를 선별하여 대상과제 선정이 부적절하였다고 지적하는 것이므로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의 이행관리가 부적절하였다는 사항 관련 국조실은 2014년에 개선 또는 중장기검토하기로 한 180건에 대한 이행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다만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당시 법체계하에서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4년에는 사실상 '경제규제 10% 감축'으로 대체하였고, 2015년부터는 규제의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네거티브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금지 사항을 범형상 열거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령 서술 방식’으로 개념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규제 감축은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고 규제의 질적 개선은 규제 수준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은 2013년 8월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과는 개념이 다르므로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에 대한 이행관리를 할 수 없었던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이 적절한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개선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네거티브 규제 개선 계획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감 사 원 인

## 통 보

제 목 규제일물제도 운영 부적정

소 관 정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국무조정실

내 용

국조실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sup>1)</sup>을 설정하도록 규제일물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표 43]과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938건의 재검토형 일물규제를 심사하여 이 중 36건을 폐지하고, 157건을 개선하는 한편, 745건(79.4%)의 규제는 존속하도록 허용하였다.

[표 43] 재검토형 일물규제 심사 결과(2013~2015년)

연도	계	규제폐지	규제 개선		규제 존속			
			소계	일물연장	일물해제	일물연장	일물해제	
2013년	845	34	140	111	29	671	480	191
2015년	93	2	17	16	1	74	52	22
계	938	36	157	127	30	745	532	213

주: 2014년은 재검토형 일물규제 심사 실적이 없음

자료: 국조실 제출자료 재구성

1) 일정 기간마다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설정되는 검토기한

### (1) 규개위 심사 없이 일물 규제의 재검토기한 연장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규개위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일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조실은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가 규개위의 심사 없이 재검토기한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소관 부처가 규개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심사를 요청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 중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등 3개 부처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존속여부를 검토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위 3개 부처는 [표 44]와 같이 2009년과 2010년 국무총리 고시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었거나 해당 법령에 재검토기한이 규정된 규제<sup>2)</sup> 61건을 당초 설정된 재검토기한이 도래했음에도 규개위에 심사 요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조실은 규제 소관 부처가 규개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심사를 요청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표 44] 규개위의 일물 규제 미심사 현황

(단위: 건)

2) 2013. 7. 16. 「행정규제기본법」에 재검토형 일물 유형을 규정하기 이전에도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 규제 법령에 재검토기한을 명시한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이 일몰이 도래한 규제가 규개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존치되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 (2) 재검토형 일몰 규제 검토서 작성 부실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계획”(2013. 6. 14. 국조실)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규제 일몰 도래 시 규제 도입 상황의 변화 등 6개 항목<sup>4)</sup>에 관한 재검 토형 일몰 규제 검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재검토형 일몰 규제 검토서를 작성하여 국조실에 이를 제출 하면 국조실은 이를 첨부하여 규개위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고 규개위<sup>5)</sup>는 일 몰 규제의 존치 필요성, 일몰 연장 필요성 등을 심사한다.

따라서 국조실은 일몰 규제 심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중앙행 정기관 재검토형 일몰 규제 검토서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적절한 보완을 요구하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몰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이 적절하지를 파악하 기 위해 감사원 감사기간 중 한국행정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국토부, 문체부, 식약 처 등 3개 부처의 일몰 규제 검토서 총 52건을 대상으로 필수 기재항목의 서술 여부, 적정성, 구체성 등을 분석하였다.

### 재검토형 일몰 규제 검토서 분석 내용

- 재검토형 일몰 규제 검토서의 충실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행정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표 45]와 같이 평가

- 4) 규제 도입 상황의 변화, 규제의 적절성, 규제의 운용실적, 일몰 설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 규제에 대한 이해관 계자 의견, 해외 유사 규제 사례 비교·분석
- 5) 일몰 규제에 대한 심사는 분과위원회에서 실시

구분	건수	대표사례
계	61	
국토부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건설업 등록 기준 중 자본금 범위」 규제는 재검토 기한이 2013. 12. 31.이었으나 재검토(규개위 심사) 없이 존치</li> <li>■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관광업의시설업의 지정 요건」 규제는 재검토기한이 2012. 12. 31.이었으나 재검토(규개위 심사) 없이 존치</li> </ul>
문체부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하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규제는 재검토기한이 2013. 12. 31.이었으나 재검토(규개위 심사) 없이 존치</li> </ul>
복지부	2	

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일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2013. 12. 31.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재검토기한 6개월 전까지 규개위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다가 2013년 11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포함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부개정령(안)”<sup>3)</sup>을 마련하면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대해 2014.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재검 토기한 연장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복지부가 2013년 11월 국조실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 토기한 규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안)”의 규제심사를 요청하자 국조실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 신설·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파악하고, 일몰 규제의 심사 대상 여부는 내 파악하지 않은 채 2013. 12. 12. 위 일부개정령(안)에 규제심사 대상이 없다는 내 용의 확인증을 발급하여 결국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규제는 규개의 의 심사 없이 재검토기한이 연장되었다.

3) 「의료법 시행규칙」의 복지부 소관 시행규칙 23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일괄 설정

지표를 마련

[표 45] 재검토형 일몰 규제 검토서 평가 지표

항목	세부 내용
규제 도입 상황의 변화	규제 도입 상황 변화의 서술 여부 상황 변화 서술의 구체성 사용된 자료의 근거(출처)
규제의 적절성	규제 내용의 서술 여부 규제 내용 서술의 적절성 사용된 자료의 근거(출처)
규제의 운용실적	규제 운용 실적 서술 여부 규제 운용 실적 제시의 적절성 사용된 자료의 근거(출처)
일몰성정 유지 필요성	일몰성정 유지 필요성 서술 여부 유지 필요성 서술의 적절성 사용된 자료의 근거(출처)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실시 여부 의견 수렴 결과 서술의 적절성 사용된 자료의 근거(출처)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 항목별로 1점(매우 부적절)에서 5점(매우 적절)까지 점수 부여
- 항목을 누락한 채 미기재한 경우 1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한 경우 2점을 부여하였고, 관련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3점 이상을 부여하여 평가

분석 결과, [표 46] 및 [별표 7] “재검토형 일몰 규제 검토서 평가 결과”와 같이 47건(90.4%)은 평가점수가 평균 이하로 나타났고, 전체 재검토형 일몰 규제 검토서의 평균점수는 2.3점(5점 만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6] 재검토형 일몰 규제 검토서 평가 결과

(단위: 점, 건)

평가항목	규제 도입 상황의 변화	규제의 적절성	규제의 운용실적	일몰성정 유지 필요성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전체 평균
평균 점수	2.3	2.4	2.2	2.8	1.8	2.3
누락 건수	5	8	15	4	19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및 구조실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한 채 재검토형 일몰 규제 검토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해관계자 의견’을 작성하지 않은 일몰 규제가 19건, ‘규제의 운용실적’을 작성하지 않은 일몰 규제가 15건이었다.

그리고 아래 사례와 같이 하나의 재검토형 일몰 규제 검토서를 작성하면서

‘규제의 적절성’, ‘규제의 운용실적’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산업단지 지정요청 자격’ 규제 검토서 작성 내용

- 재검토 결과: 규제 유지
  - ① 당초 규제를 도입하게 된 상황의 변화 여부
    - 산업단지 신규지정이 2011년부터 연평균 수모(14.7㎡) 내로 안정화되고, 이에 따라 분양도 안정 추세로 산업단지 지정 요청 민간기업 범위 유지
  - ② 일몰 설정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성
    - 산업단지 지정 요청 민간기업 범위(제한)는 계속 유지하되 여건 변화 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기한 설정 불필요
      - \* 규제의 적절성, 규제의 운용실적,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등 3개 항목 누락
- 부처 검토의견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실수로 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정 요청 민간기업 범위 제한 필요

관계기관 의견    구조실은 일몰 규제 심사가 누락되지 않고 재검토형 일몰 규제 검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별표 7]

재검토형 일몰 규제 검토서 평가 결과

(단위: 점)



연번	소관 부처	규정 명	규제 내용	평균
1	국토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원도소유자에 대한 양도	1.1
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항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 등	1.1
3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 주주의 취임	1.3
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1.3
5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등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4
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7	임대전송산업단지의 적용특례	1.6
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7항	사업시행자 교체요건 구체화	1.6
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6항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 아파트형 공공건축물 포함할 경우 의무임대비용율 설정	1.6
9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3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일자	1.7
10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1.7
11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등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1.7
12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개발구역 지정	1.7
13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6조	과태료 부과	1.7
14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0조	과태료 부과	1.9
1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4항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1.9
16	-	「건축법」 제63조 등	은돌 및 난방설비의 시공	2
1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토지강제 변경	2.1
1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및 제82조 제10항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비율	2.1
1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주택의 구조기준	2.1
2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2.3
2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2.3
22	-	「도시개발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4
23	-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2.4
24	-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6조 ~ 제30조 [별표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4
2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 제2항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허용	2.9
26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준공감사	3
27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심사계획의 승인	3
28	국토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3
29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3

연번	소관 부처	규정 명	규제 내용	평균
30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3
31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3.1
32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선수금	3.1
33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 시 승인	3.1
34	-	「도시개발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3.3
35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3.4
36	-	국토계획법 제89조 제81 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등	시기화조장구역 인에서의 행위제한 등	3.6
37	-	국토계획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개발원도관리구역	3.6
38	-	「동·서·남·북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7조	토지의 직접 사용	3.6
39	문체부	「경륜·경정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승차투표권의 발매	2.4
40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2, 제2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4
41	-	「관광진흥법」 제21 조	키지노업 허가	2.6
42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종사자 연수 제도	2.6
43	-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수탁사업자의 위탁 운영비 취득금액 제한	2.7
44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제1항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현금 지급	2.9
45	-	「경륜·경정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수익금의 사용	2.9
46	-	「관광진흥법」 제28조	키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	3
47	-	「경륜·경정법」 제9조 등	경륜·경정 사업의 위탁	3.1
48	-	「경륜·경정법」 제15조 등	경륜·경정 발매수익률 제한	3.4
49	-	「경륜·경정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경륜경정 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3.7
5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비디오물의 음금 등의 표시 의무	4
5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5조 등	음악영상물 등급 분류 등	4
52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4조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1.9

자료: 감사원 및 한국행정연구원 검토결과

### 조치할 사항

### 국무조정실장은

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가 규제

혁위원회의 일몰 규제 심사 대상에서 누락된 채 재검토기한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② 각 규제 소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재검토형 일몰 규제 검토서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적절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 규제일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